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95
------	-----

2019. 2.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월 30일, 김종무의원(찬성의원 21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2. 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종무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정책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관련 조례에는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일관성 없는 용역결과 관리로 인하여 중복·유사 용역 발주, 용역 결과 부실 및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종료 후 3개월 내에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비공개 가능한 대상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본청과 소속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제정안 취지와 필요성

-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는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현안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검사·평가 등의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로 인해 유사·중복 용역 수행은 물론, 정책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 저하 등으로 예산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제54조제2항).

-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를 언제,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최근 5년간 중앙·지방정부와 공직유관단체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3만 3,985건) 중 절반 이상(52.6%)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¹⁾
- 이에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유사·중복 연구 방지 및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의되었음.
-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연구 내용의 유사·중복과 활용여부에 대한 원활한 정보 공유와 검증을 통해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2018.10)

다. 세부 내용 검토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경우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5개 공사·공단, 18개 출자·출연기관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됨.
-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4조).
- 일반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별도의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정의를 둘러싼 법률과 조례의 용어 차이는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며, 각각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는 적절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에 관한 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정책연구와 관련된 ‘정의’ 규정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외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행정운영업무 편람」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2조(정의)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학술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개발이나 사업 지문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기술용역, 정보통신용역, 그 밖에 일반용역은 제외한다.

-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함(국민권익위원회, 2018.10).
- 또한, 정책연구용역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학술용역’ 정의와 같이 기술·전산·임상연구와 설문 조사 등의 일반연구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바, 제정안과 같이 기술·응용과학 분야를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2)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구체적인 시스템의 명칭과 세부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장에게 위임하였음.
- 이와 같이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상의 ‘정보소통광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는 별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서울시의 관리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함.

3)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안 제4조)

-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1항).

또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은 '정책연구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²⁾(제2항) 그 외 서울시가 설치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제3항).

- 현행,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³⁾에서는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원칙)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한다.
- ③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

서울시를 포함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신속하게,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방법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의 중복성·실효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것임.

4) 비공개 대상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비공개 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4)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제1항).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또한,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보류의 대상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 이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시하는 것은 공공연한 공개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거나, 비공개대상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해 비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5) 평가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공개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와 경영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적극적인 공개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다만, 제정안은 18개 출자·출연기관에만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그리고 5개 공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라. 종합의견

- 그 동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가 미흡해 중복·유사 용역 발주,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연구결과를 언제, 어디에 공개해야 하는지 공개방법 등이 부재하여 일관성 없이 관리되어 왔음.
- 이에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 제고, 유사·중복 연구 방지,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음.
- 이를 통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성과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 시민 등에 공개방법을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나,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이미 시행중에 있어 중복성·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공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활용, 활용상황의 점검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의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하는 한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법 취지를 강화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 함(안 제1조).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함(안 제2조 제2호).
-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이행여부를 출자·출연기관에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서울시 모든 집행기관에 적용되도록 수정함(안 제6조).

-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로 수정함(안 부칙).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5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의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하는 한편,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입법 취지를 강화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조례의 본문에서 각각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수정해 관계 법령과의 용어의 혼선을 방지 함(안 제1조).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어를 일반적인 정의로 수정함(안 제2조 제2호).

-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 공개 이행여부를 출자·출연기관에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서울시 모든 집행기관에 적용되도록 수정함(안 제6조).
- 시스템 개발과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로 수정함(안 부칙).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함으로써”를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공공기관”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은”을 “집행기관은”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를 “집행기관의”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게 함으로써</u>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공공기관”</u>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p> <p>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p> <p>2. <u>“정책연구용역”</u>이란 <u>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에 관한 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을</u> 말한다.</p>	<p><u>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u>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집행기관”</u>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p> <p>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p> <p>2. <u>“정책연구용역”</u>이란 <u>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u> 말한다.</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공공기관</u>이 실시한 정책연구 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u>공공기관과</u>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시스템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u> ② (생략)</p>	<p>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집행기관</u>이 실시한 정책연구 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u>집행기관과</u>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u><후단 삭제></u> ② (제정안과 같음)</p>
<p>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u>공공기관</u>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p>	<p>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u>집행기관</u>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생략)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u>공공기관의</u>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u>집행기관의</u>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평가 등) <u>시장은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관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공공기관에</u></p>	<p>제6조(평가 등) <u>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 시행</u>한다.</p>	<p>제7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 행</u>한다.</p>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평가 등)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각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